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6. 5. 2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4월 14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4월 21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9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(2016. 4. 29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 제안설명자 : 재정국장 서종석 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세 자치법규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.
-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, 한국지방세 연구원 등과의 합동작업을 통하여 자치법규 기본안을 마련('15.8월)함에 따라 우리 구도 통일적·효율적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부과·징수사무의 위임 등(안 제3조), 서류송달의 방법(안 제5조)
- 교부금전의 예탁(안 제6조),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(안 제7조), 지방세심의위원회(안 제8조)
-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(안 제4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기영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, 중복규정이나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 등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<조례정비 내역>

현행		개정
제1장 총칙		1조~10조
제2장 부과징수		11조~25조
제3장 체납처분		
	제1절 압류 및 해제	26조~34조
	제2절 처분	35조~39조
	제3절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	40조~47조
제4장 보칙		48조~53조

- 현행 4장 3절 53개 조항의 법규체제를 9개 조항으로 대폭 줄이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개정 내용을 보면,
-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규정, 다른 법령과의 관계, 부과징수사무의 위임,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, 서류송달 방법 등 조례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교부금전의 예탁, 부과징수사무의 위임,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,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근거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-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부과징수, 체납처분, 압류 및 해제, 공매처분, 회생절차 등과 관련된 조항은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는바, 이는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, 행정력 낭비, 제때에 개정되지 않을 경우 조례 효력에 대한 다툼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임.
-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, 법령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입법 경제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사례가 될 것이며,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법률상식이 생활 속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입법 모범사례가 될 것임.

#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29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4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세 자치법규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
-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·도, 한국지방세 연구원 등과의 합동작업을 통하여 자치법규 기본안을 마련('15.8월)함에 따라 우리구도 통일적·효율적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구세 기본 조례 【 53개 조항 ⇒ 9개 조항 】

- (1) 「지방세기본법」, 동법 「시행령」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조문 정비(5개 조항)
  - 부과·징수사무의 위임 등(안 제3조), 서류송달의 방법(안 제5조), 교부금전의 예탁(안 제6조),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(안 제7조), 지방세심의위원회(안 제8조)
- (2) 기타 납세의무자 신고·납부업무 편의성 증진(1개 조항)
  -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(안 제4조)
- (3) 기타 조례의 목적,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규정(3개 조항)

나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세기본법」, 동법 「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다. 합의사항

- (1) 규제심사 : 대상사무 없음

(2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실시(의견 없음)

라. 기타사항

(1) 입법예고(2016. 3. 10 ~ 3. 30, 20일간) 결과 : 의견 없음

(2) 서울특별시 표준안 1부 별첨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(이하 "구세"라 한다)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」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부과·징수사무의 위임 등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제4조(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) ① 구청장은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등록 사무를 서울특별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 이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

해당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부하여야 한다.

제5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·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.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·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,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② 영 제11조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바”란 구청장이 동장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·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교부금전의 예탁) ① 법 제72조에 따라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7조(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)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“성실납부자”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연간 3건 이상 (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, 재산세,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)을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.

제8조(지방세심의위원회)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.

제9조(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